

# 2006년 자연재난관리 주요시책과 발전방향



김 계 조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장  
password@nema.go.kr

## 1. 우리나라의 재난여건과 재난환경의 전망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안전에 대한 예방투자 미흡,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90년 이후 대규모 자연·인적 재난을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태풍 「루사」·「매미」, '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04년 3월 폭설 등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자연·인적 재난이 빈발하여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자연·인적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형학적·기상학적 이유 이외에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재해취약요인의 증가와 지구온난화·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즉, 연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홍수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대규모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도시 토지이용도의 극대화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확대 등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재난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집중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 등으로 대형재난의 발생 가

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재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2004년 국가재난관리전담조직으로서 소방방재청을 출범시키고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 철저한 사전대비 및 주민대피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난상황관리 및 긴급대처기능을 개선한 결과, '02년 「루사」, '03년 「매미」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평균 1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던 것에 비해, '04년~'05년에는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예방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예방위주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연재난관리 분야에 있어 2005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되돌아 보고, 2006년 주요 재난관리시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2005년 자연재난관리 성과 및 반성

2005년 자연재난관리 시책의 주요성과로는 '예방위주의 과학적 선진방재정책의 토대 마련'과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대폭 감소', '복구지원체계의 혁신과 평가시스템 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인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위주의 과학적 선진방재정책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05.8.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풍수해저감종합계획·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사전예방 위주의 방재제도 도입 등 신규 혁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진 T/F를 발족,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수립 및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진재해경감종합개선대책을 제도화하고,

지하공간침수방지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침투시설) 등 재해저감을 위한 수방기준 제정·운영과 새로운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방재전문인력 육성 등 방재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여 선진방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비 확대 투자를 위한 Matching Fund 방식 강화와 각종 인센티브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예방투자사업의 확충과 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CBS 자동음성통보, E-30 대피계획, 매뉴얼화된 체계적 상황관리, 단계별 위기경보 등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인명피해는 85%, 재산피해는 54%까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복구지원체계 혁신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을 위하여 피해 허위·과장보고 방지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유도를 위한 국고 추가지원 방법 등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사유시설 복구비용 무상지원방식을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근거 법률인 「풍수해보험법」 제정하여 충북 영동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풍수해보험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재민의 성별·체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구호물품세트」개발, 구호물자의 체계적인 접수·배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군·구에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설치·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과,

두차례에 걸친 자치단체 시범평가를 통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반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각종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나 지자체·민간의 전문인력 부족과 방재품셈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의 조기정착의 차질 등, 새로 도입된 혁신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전문인력 부족과 자치단체장의 인식미흡 등으로 인해 과학적 재난대응체계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 강화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3. 2006년 자연재난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006년 자연재난관리의 목표는 첫째, 새로 도입된 예방위주의 방재제도 조기 정착. 둘째, 예방사업 투자확충 및 재난취약지역 위험요인 해소. 셋째, 자율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자기책임형 방재시스템 구축. 넷째, 복구혁신체제 정착 및 이재민 눈높이에 맞춘 구호행정 실현 등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방향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방재전문교육 활성화, 방재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한 방재분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② 예방사업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사업 투자확대
- ③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난에 취

약한 지역 및 시설물의 위험요인 근원적 해소

- ④ 지역자율방재단 지속 추진,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등 주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재시스템 정착
- ⑤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합리적 지원체제 조기 구축
- ⑥ 이재민 중심의 맞춤형 구호배분 시스템 구축, 조기 생활안정 도모

#### 4. 2006년 자연재난관리 주요시책

##### 1) 자연재난의 근원적 예방·경감대책 추진

자연재난의 근원적 예방·경감을 위하여 신규 예방·경감제도의 조기정착과 예방사업 투자확충 및 재난위험대상 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각종 연구·교육·홍보 및 자율방재기능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가) 신규 예방·경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제도는 다음과 같다.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효율적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95개 분야(행정계획 48, 개발사업 47)를 협의대상으로 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및 용역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의대상사업의 세부기준 개정과 주요 검토항목 보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의 신속한 협의 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 (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조기정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 시도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종합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된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지자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해정보 구축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Guide Line을 개발·보급한다

###### (3) 재해지도 제작·활용 지원

태풍, 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흔적 등을 조사·분석하여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를 제작,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시 이를 반영토록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방재교육 등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2개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재해지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성·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중앙차원의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4) 시설물 수방기준 등 재해경감기준 제정·운영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 근거하여 재해로부터 각종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 등을 제정·운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별로 수방기준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사용승인시 적용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 (5)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촉진을 통한 예방기능 강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우수를 인공적으로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켜 하천이나 저지대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제정·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침투시설, 저류시설 등 우수유출저감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개발사업자 및 공공시설관리자는 저감대책 수립과 시설을 설치하며, 지자체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6)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제도 정착 및 방재 산업 육성

자연재해가 대형화 되면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방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자연재해저감 기술의 보급 촉진 및 실용화를 위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확인 및 기술인증 제도를 정착·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의 보급·육성을 위한 기준 설정과 방재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한다.

(7) 신규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행기관 육성 등 제도보완

제도도입에 따른 대행근거, 전문인력 및 방재품셈 등이 미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EAP 및 풍수해저감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분야 전문용역업체를 육성하고 교육기관 선정과 교육이수자 평가 및 인증서 발급·활용 방안 등을 마련, 방재분야 민간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비상대처계획(EAP)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복구사업 평가 등의 용역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셈을 개발·보급한다.

나) 예방사업 투자확충 및 재난위험대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시행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전국의 재해취약요인을 일제 조사하여 중기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틀을 마련하고 투자확대를 통하여 조기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한다.

이를 위하여, '98년부터 2005년까지 9,912억원(국비 6,190, 지방비 3,722)을 투자하여 326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06년도에는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120개 지구에 1천9백41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침 개선방안 마련과 전국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

및 5개년 정비계획수립을 수립,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투자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재해위험 소하천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목적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수공간 확보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소하천은 총연장 35,815km에 22,664개소가 있으며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5,528km에 11조 7,0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년부터 2005까지 13,206억원(국비5,906, 지방비7,300)을 투자하여 2,668km를 정비하였으며, '06년에는 1,924억원(국비497, 지방비1,427)의 사업비를 들여 788개소에 293km를 정비 중에 있다.

(3)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별 강수량 등 자연조건과 비탈면 성상 등의 지반공학적 조건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작성,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며,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한 토질조사 자료를 DB화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질조사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강수량·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한 지역별 주민대피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급경사지 붕괴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안 마련하며,

토질 조사자료 DB구축 대상 공사의 종류·규모 검토 및 토질자료의 효율적 DB구축을 위한 표준화 방안과 구축된 DB를 이용한 급경사지의 관리 등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4) 저수지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대규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댐·저수지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수지 안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작성·보급한다.

이를 위하여, 저수지 안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항목

과 시설물별 안전성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저수지의 관리체계 및 안전점검·안전성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5)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지속 추진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 등으로 대형 지진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불의의 사태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필요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서 발굴한 개선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지진방재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시설의 내진성능 및 시설별 등급기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강구 대책을 마련하고,

연안지역 지진해일대책 및 지진방재관련 교육·훈련·홍보 추진과 지진방재 중장기 대책을 위한 R&D 과제 발굴 등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기틀을 마련한다.

다) 연구·교육·홍보 및 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시행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분야 R&D사업 추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저감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피해저감능력 향상과 국가차원의 종합적 자연재해 연구개발 기반 구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05년까지 5개 과제에 대하여 7억원('05.6.30~'06.4.30)을 투자, 과기부에서 인수한 1차 사업('03~'05)을 최종 평가하고,

'06년에는 9개 과제에 대하여 40억원을 투자, 연구 과제 선정·공고 및 국가R&D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3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과 연도별 추진 및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3) 방재안전 민간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에 의하여 방재안전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교육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복구사업 분석·평가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과,

위탁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며 교육이수자 인증서 발급 및 방재업무 수행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다.

2) 신속·정확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보강

신속·정확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풍수해·설해 등 종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와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그리고 IT기술을 활용한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운영 및 DMB를 활용한 재난방송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풍수해·설해 등 종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빈발하는 대형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을 목표로 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한 철저한 재난관리와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를 확

립하고 재난예방사업의 조기추진과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신속한 재난예·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나)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난발생시 지진, 해일, 댐·저수지 관리주체가 소관 분야 비상대처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진, 해일,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행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지정 및 대행자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분야별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지역을 선정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댐·저수지 붕괴, 지진, 해일 대비 EAP 표준지침서에 대한 평가·보완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 IT기술을 활용한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운영**

CBS 자체운영시스템을 구축, 긴급한 재난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발생 및 예견시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이동통신3사(SKTEL, KTF, LGT)와「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협정을 체결('04.12~'05.4월)하였고 2005년 5월 15일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의 전국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을 '05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 125개 지구에 408억원의 국고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다.

**라) DMB를 활용한 재난방송시스템 도입**

DMB 방송이 '05. 12. 1부터 수도권에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DMB 시대에 대비한 재난방송 시스템 도입방안 필요함에 따라, 재난방송 시스템 도입 이전에 표준화를 추진, 송출시스템 및 수신단말기의 표준규격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DMB 재난방송을 위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재난방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강구한다.

**3) 수해자 중심의 복구지원체제 확립**

수해자 중심의 복구지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구사업 추진시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과제 지속 추진**

자연재난의 피해조사 단계에서부터 복구사업의 사후평가 및 정책환류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마련한 29개 혁신과제중 미완료된 9개과제를 중간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추진중인 9개 혁신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해조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확보
- ② 사유시설 조사기법개발 및 교육강화
- ③ 피해시설 규모를 감안한 복구계획 수립절차 개선
- ④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⑤ 재해대책 예비비 일반회계 편성
- ⑥ 재해복구기금 도입
- ⑦ 복구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 ⑧ 일정규모이상 국가가 직접 집행·관리
- ⑨ 수해복구사업 유형별 사례분석 실무지침서 발간 등

**나)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 사전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비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검사 이전단계에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업시행효과 등을 사전심의하여 사업시행과정의 오류를 방지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및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등을 검토한다.

**4)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정착**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실시와 지역별 안전도 진단 시범평가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05년도 평가를 실시하며, '06년도에는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일부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실시함.

이를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05.12.28 실시) 및 유공공무원 표창('06.5) 등 '0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방법·평가항목·평가매뉴얼 개발과 시범평가 실시 등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나) 지역별 안전도 진단 시범평가**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 피해저감 능력 등을 감

안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 진단 제도 도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재 활용 가능한「지역별 안전도 진단」전산시스템 개발과 '06년 세부 안전도 진단 수행방안 확정 및 지침서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별안전도 진단시스템 구축 및 세부평가 수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별 안전도에 대한 '06년 진단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다)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시범사업 실시**

일정규모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종합분석평가 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준」에 대한 1차 연구용역의 완료에 따라, 제시된 각종 평가자료 등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자 대표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복구지역 유역현황, 재해취약 요인, 과거 재해기록 등 일반현황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대상 시설의 범위 설정 및 평가분류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피해발생 원인 분석, 복구계획 수립, 복구사업 사후영향 평가 등 복구계획 단계별 평가요소에 대한 실제 활용도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 (주)